

Q & A

■■■■■ **Question**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접착제 용기에 경고표지도 부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 및 경고 표지부착 대상은 노동부고시 제97-27호(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 별표1에 규정된 폭발성, 인화성, 독성, 발암성 등 16가지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을 1% 이상 (발암성물질은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 해당됩니다.

○ 따라서 접착제에 대하여는 동 제품의 물리화학적 성상과 구체적인 구성성분 및 이들의 유해위험성 등을 파악한 후 위 16가지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MSDS작성 및 경고표지부착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중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철골제조·조립 및 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중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순수난방용인 보일러(규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대상임)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30일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체가 시공하려고 하는 공사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 업종 또는 규모인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건설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대상인 순수난방용 보일러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법적용대상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는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자체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87-10호, 87. 1. 16)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행한 때에는 당해 검사부문에 한하여 이중검사를 배제하며,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주기가 짧은 것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건설용 리프트 설치·해체작업과 관련된 자격 및 면허의 필요 여부 및 필요시 종류 및 세부직종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건설용 리프트를 건설현장에 입대, 설치, 해체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상 별도의 자격 및 면허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23조 및 산업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리프트를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때의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의 지휘 및 재료의 결합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제거, 작업 중 안전 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추락방지망 및 난간대용 안전망을 비롯하여 안전시설물의 해체로 인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내 설치한 안전시설물의 해체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원가 구성상 폐기물 처리비에 해당하므로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당 사업소는 64명의 인원(사무직 4명, 경비직 50명, 기능직 10명)으로서 아파트경비 등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서비스업종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법 제16조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동법 제17조에 의한 산업보건의도 선임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업(아파트관리 사무소도 해당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자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보건의는 자율로 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별표1』 제4호의 각목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kg 미만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00kW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kW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t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일평균 4,000m³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kg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 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출처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코너에서 발췌한 자료임.